

제66조제1호의2를 제1호의3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호의3(중전의 제1호의2) 중 “제13조의3제5항”을 “제13조의5제5항”으로 한다.

1의2. 제13조의3제5항에 따른 승인 조건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재활용한 자  
제68조제1항제9호 중 “제13조의3제2항”을 “제13조의5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은 중전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이유**

폐기물의 재활용을 활성화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을 새로 설정하여 이를 위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규제 방식을 원칙허용·예외금지 방식으로 변경하되,

일정 규모 이상의 폐기물을 토양·지하수·지표수 등에 직접 접촉시키는 방법과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을 정하지 아니한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재활용환경성평가를 거쳐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그 밖에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을 지정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폐기물의 종류 및 재활용 유형을 세분화함(제2조의2 신설).
- 나.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폐기물 취급기준 등의 준수사항을 마련함(제13조의2).
- 다. 폐기물을 토양·지하수·지표수 등에 접촉시키는 방법으로 재활용하려는 자 또는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을 정하지 않은 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자는 재활용환경성평가 및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제13조의3 신설).
- 라.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절차를 마련함(제13조의4 신설).
- 마.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기술인력은 교육을 받도록 함(제35조제1항제3호 신설).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박 근 혜** 인

2015년 7월 20일

국무총리 황 교 안

국무위원  
고용노동부장관 이 기 권

**●법률 제13412호**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근로복지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 전단 중 “전체의 5분의 1 이상”을 “2명 이상”으로 한다.

제35조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우리사주를 취득하기”를 “우리사주 취득 등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43조의2에 따른 손실보전거래

제43조제3항 본문 중 “우리사주를”을 “우리사주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외에는”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43조의3에 따른 우리사주 대여
2. 대통령령으로 정한 우리사주조합원의 금융·경제생활에 필요한 경우

제43조제4항 중 “제3항 단서”를 “제3항제2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제43조의3에 따라 대여된 우리사주는 그 대여기간 동안 이 법에 따라 예탁된 것으로 본다.
- ⑥ 조합원 계정에 배정된 주식에 대한 대여이익은 해당 계정의 조합원에게 지급되어야 하며, 조합원 계정에 배정된 주식에 대한 대여이익은 조합에 귀속한다.

제43조의2 및 제43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3조의2(예탁 우리사주의 손실보전거래) ① 우리사주조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와 제43조에 따라 예탁된 우리사주의 손실보전 목적에 한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이하 “손실보전거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 ② 우리사주조합이 손실보전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에서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③ 우리사주조합과 금융회사 간의 손실보전거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할 수 있다.

1. 손실보전거래의 대상인 우리사주의 매도 또는 그 취득자금의 대출을 조건으로 하지 아니할 것
2. 최소 손실보전비율이 손실보전거래 대상 우리사주 취득가액의 100분의 50 이상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 이상일 것
3. 우리사주조합원의 의사에 반하여 손실보전거래를 하지 아니할 것
4. 기타 우리사주조합 및 우리사주조합원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④ 조합원의 계정에 배정된 주식에 대한 손실보전거래의 보전금액은 해당 계정의 조합원에게 지급하고, 조합의 계정에 배정된 주식에 대한 손실보전거래의 보전금액은 조합에 귀속한다.

제43조의3(예탁 우리사주 대여) 우리사주조합 또는 우리사주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예탁된 우리사주를 제43조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을 통하여 제3자에게 대여할 수 있다.

1. 대여하는 우리사주(이하 “대여우리사주”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 목의 권리를 보장할 것
  - 가. 의결권
  - 나. 신주인수권 및 무상증자 주식

다. 배당금(주식배당 포함) 수령권

라. 그 밖에 「상법」 등 다른 법률에서 주주의 권리로 인정되는 것으로서 이 법에서 제한하거나 금지하지 아니한 권리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차거래 중개·주선업무를 영위하는 금융회사가 대여우리사주의 상환을 보장하고, 차입자로부터 담보를 받을 것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리사주 대여방법, 대여한도 및 대여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준수할 것

제59조 및 제79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3장제2절에 제8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0조의2(규제의 재검토)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53조에 따른 정관변경의 인가
2. 제56조제1항에 따른 복지기금협회의 협의·결정 사항
3. 제58조에 따른 이사 및 감사
4. 제75조에 따른 기금법인의 분할·분할합병
5. 제76조에 따른 분할등에 의한 기금법인의 설립 및 등기

제3장에 제4절(제86조의2부터 제86조의11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4절 공동근로복지기금 제도

제86조의2(공동근로복지기금의 조성) ① 둘 이상의 사업주는 제62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이익금의 일부를 출연하여 공동근로복지기금(이하 “공동기금”이라 한다)을 조성할 수 있다.

② 공동기금 사업주 또는 사업주 이외의 자는 제1항에 따른 출연 외에 유가증권, 현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

제86조의3(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준비위원회 구성)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공동기금법인”이라 한다)을 설립하려는 사업주는 공동으로 각 사업주 또는 사업주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설립에 관한 사무와 설립 당시의 이사 및 감사의 선임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제86조의4(공동근로복지기금협회의 구성) ① 공동기금법인은 기금의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협의·결정하기 위하여 공동근로복지기금협회(이하 “공동기금협회”라 한다)를 둔다.

② 공동기금협회는 각 기업별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각 1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제55조제2항을 준용하여 선출하고,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해당 사업의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제86조의5(공동기금제도의 촉진) 공동기금법인이 제62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근로복지진흥기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86조의6(공동기금법인의 분쟁조정) 공동기금법인에서 공동기금 운영방식, 사용용도, 출연금 규모 등에 있어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

제86조의7(공동기금법인의 해산사유) 공동기금법인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해산한다.

1. 공동기금법인 참여 회사 중 과반수 회사의 사업의 폐지
2. 제86조의9에 따른 공동기금법인의 합병
3. 제86조의10에 따른 공동기금법인의 분할·분할합병

제86조의8(해산한 공동기금법인의 재산처리) 제86조의7에 따라 공동기금법인이 해산하는 경우에는 제86조의2에 따라 공동기금법인에 출연한 비율에 따라 참여회사에 배분하여야 하며,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

제86조의9(공동기금법인의 합병) ① 공동기금법인은 참여회사 과반수 회사의 사업의 합병·양수 등에 따라 합병할 수 있다.

② 공동기금법인의 합병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72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86조의10(공동기금법인의 분할·분할합병) ① 공동기금법인은 참여회사 과반수 회사의 사업의 분할·분할합병 등에 따라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할 수 있다.

② 공동기금법인의 분할·분할합병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7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제86조의11(준용) 공동기금제도에 관하여는 제50조부터 제54조까지,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 제60조, 제62조부터 제69조까지, 제73조, 제74조,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 제80조, 제9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 제56조, 제63조, 제64조 중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공동기금”으로 보고, 제52조부터 제54조까지,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 제60조, 제62조, 제64조부터 제69조까지, 제73조, 제74조, 제76조, 제77조, 제80조, 제93조 중 “기금법인”은 “공동기금법인”으로 보며, 제54조,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 제60조, 제62조, 제66조, 제68조, 제78조 중 “복지기금협의회”는 “공동기금협의회”로 보고, 제62조, 제78조 중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은 “공동기금사업”으로 본다.

제91조제7호 중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및 공동기금제도”로 한다.

제5장에 제9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5조의2(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에 따라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제2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19조부터 제27조까지 및 제31조를 적용할 때에는 그 사업의 근로자로 본다. 다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적용 제외를 신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7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62조(제86조의11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63조(제86조의11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기금법인을 운영한 이사

제97조제2호 중 “제67조”를 “제67조(제86조의11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제68조제1항”을 “제68조제1항(제86조의11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제71조”를 “제71조 및 제86조의8”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제78조”를 “제78조(제86조의11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99조제1항 중 “제69조”를 “제69조(제86조의11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제57조 또는 제65조”를 “제57조(제86조의11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65조(제86조의11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제93조제1항제3호”를 “제93조제1항제3호(제86조의11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제7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제7항”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이사 등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이사 등의 임기는 제5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사주제도는 근로자로 하여금 자기 회사의 주식을 취득·보유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과 노사 협력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나, 근로자가 주가하락에 따른 손실 등을 우려하여 우리사주 취득 및 장기보유를 기피함에 따라 우리사주 취득 및 장기보유를 유도하기 위하여 우리사주 손실보전 거래 및 대여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아울러, 현행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상대적으로 복지수준이 높은 대기업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대·중소기업 복지격차가 심화되고 있고, 기업단위에서만 설립할 수 있어 다수 기업이 공동으로 기금을 설립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둘 이상이 기업이 공동으로 근로복지기금을 조성하여 중소기업 등 취약 근로자를 위한 다양한 복지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공동근로복지기금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근로복지사업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저소득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산재보험 가입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하여 근로복지진흥기금을 통한 의료비, 학자금, 장례비 등의 대부사업에 특례 적용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7월 20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해양수산부장 **유기준**

**●법률 제13413호**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본문 중 “광역시장”을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으로 한다.